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5
----------	------

2022. 3. 17.(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등(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안 제3조)
- 정관 및 이사회 등(안 제4조, 제5조)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성(안 제7조)
- 예산·결산, 지도·감독·검사 등(안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제정이유

- 재단법인 충북교육장학재단은 2000. 12. 자본금 전액을 충청북도 교육감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설립함에 따라 조례로 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재단법인 충북교육장학재단은 근거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으로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현재 능력과 상황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한된 재단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타 시·도교육청 장학재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재단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강원	강원교육장학회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07.08. 2021.12.24.	
경기	경기교육장학재단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2011.01.10. 2011.01.10.	
대구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10. 2021.04.12.	
대전	대전행복교육 장학재단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2016.06.10. 2021.12.29.	
세종	세종교육장학회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5.07.30. 2016.08.10.	
전북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0.18. 2012.10.05.	

- 또한, 정관, 이사회,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사항,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결산, 지도·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재단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목 차		주 요 내 용
조	표 제	
제 명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적	▶조례 제정 목적 기술
2	재단의 설립 등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3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관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함
5	이사회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6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7	재원조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8	출연금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교육감 출연
9	예산·결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제출
10	지도·감독·검사	▶재단의 업무 지도·감독 ▶운영상황 평가 보고 및 확인 검사
11	운영규정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정
부 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3.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6.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교육감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예산·결산)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검사)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교육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

2. 비용 발생 요인: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 수행

3. 관련조문: 제3조(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 및 출연금 지급 ('17년 약정: 4년간 600,000천원, '21년 약정: 4년간 719,000천원으로 '25년 약정시 4년간 800,000천원 반영)
- 기부금, 재산수입 연도별 인상을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2,414,000

다. 재원조달방안: 관련조문 제7조(재원조성)

- 충청북도교육청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2,414,000
출연금	179,000	180,000	180,000	180,000	200,000	919,000
기부금	2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330,000
재산수입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250,000
이월금	230,000	200,000	180,000	160,000	140,000	910,000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 출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2,414,000
목적사업비	232,000	257,000	281,000	295,000	319,000	1,384,000
기본재산적립금	30,000	30,000	30,000	40,000	50,000	180,000
운영비	2,000	3,000	4,000	5,000	6,000	20,000
예비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차기이월금	200,000	180,000	160,000	140,000	120,000	800,000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2,414,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470,000	476,000	481,000	486,000	501,000
		2,414,000	2,414,000	2,414,000	2,414,000	2,414,000